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해

곽병태

약학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청

btk5@naver.com

마약(Narcotic Drugs)은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 에서 유래되었으며 금세기 최고의 진통제이다. 다만 투약 중지시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물질이며 오·남용시 가져오는 피해는 인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마약은 제조방법에 따라 양귀비에서 추출한 천연마약(아편, 모르핀, 코데인 등)과 천연마약을 원료로 제조한 반 합성마약(헤로인 등), 화학적으로 합성한 합성마약(페치딘, 펜타닐, 메사돈 등)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마약 112종과 향정신성의약품 205종, 대마 등 318종의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하며 이중 마약 11종과 향정신성의약품 40종을 의료용으로 허가된 상태이며 동물용으로 허가된 마약은 1종(2개 품목)과 향정신성의약품은 4종이 있다. 또한,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1. 6. 7)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임시마약 지정권한을 주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질이 마약대용으로 환각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질 경우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2011. 9. 8부터 실시)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적인 마약류의 관리는 UN산하의 심의기구로 마약위원회(CND : Commission on Narcotic Drugs)가 있으며 집행기구로는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 UN office for Drug and crime) 와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가 있어 전 세계의 마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불법 마약류에 대해서는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등에서 감독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시·군·구보건소)에서 담당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마약중독자 치료기관(12개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비롯한 민간단체와 함께 마약중독자의 상담, 재활, 치료, 홍보 등의 운동을 통하여 마약중독의 양산을 억제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국민보건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55조를 근거로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기존 마약법(1957년제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1979년제정), 대마관리법(1976년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제협약 등을 근거로 새로운 법률로 제정(2000. 1. 12) 하였으며 현재까지 6차에 걸쳐 개정(2011. 6. 7)한 법률이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마약류관리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면 자연히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동물병원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취급하지 아니하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를 취급하는 순간부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된다.

수의사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을 뿐 제조나 판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 마약류를 구입·사용·보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마약류의 구입

##### ① 마약의 구입

- 마약을 구입할 때에는 관할 시·도내 소재한 약국이나 의약품도매상으로서 마약류도매업 허가가 있는 마약류도매업자에

게서 만 구입하여야 함.

- 또한, 마약 구입시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구입서·판매서를 필히 받아야 함.

##### ②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

- 마약류제조업소나 마약류도매업소에서 구입이 가능 함.

##### ③ 기타 마약류취급자에게서 마약류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양도·양수승인을 받아야 함.

- ※ 동물의약품도매업자는 의약품도매업자나 마약류도매업자가 아니므로 마약류 또는 인체용의약품 구입할 수 없다.

- ※ 수의사나 약국 등에게서 마약류를 임의로 구입시에는 판매자와 구입자가 동시에 처벌 됨.

- ※ 마약의 구입서·판매서의 보관기간은 2년간 임.

#### 2. 마약류의 사용

##### ① 마약류는 진료의 목적으로 만 취급이 가능하며 양육업자 또는 양식업자 등에게 판매는 불가능 함.

##### ② 여러가지 마약류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무자격자의 마약류 제조·판매에 해당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함.

##### ③ 동물병원내 직원들이 수의사의 행위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임의로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무자격자의 마약류취급 행위 등의 처벌대상이 됨.

### 3. 마약류의 보관

- ① 마약 : 2중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보관
- ② 향정신성의약품 :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
  - ※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조제시간에는 조제대 위에 비치하고 취급할 수 있으나 마약은 필요시 마다 금고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으며 금고는 항상 잠겨있어야 함.
  - ※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함.
  - ※ 「저장시설점검부」는 금고 옆에 비치하고 매일 기록·보관하여야 함.

### 4. 사고마약류의 처리

- ① 사고마약류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에 아래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재해(수해, 화재 등)로 인한 상실(시·도 지사가 발급한 서류)
  - 분실 또는 도난(수사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변질·부패 또는 파손
- ②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하고자 할 때
  - 변질·부패 또는 파손,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또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및 보관이 곤란한 경우 허가관청에 마약류 폐기신청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함.
- ③ 사고마약류의 보관도 마약류보관규정에 따라 보관 하여야 함.

### 5.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이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 후견인, 청산인은 상실된 날로부터 20일내에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양도·양수 전까지 보관할 수 있다.

### 6. 마약류관리대장

- ① 마약류관리대장에는 구입 내용과 마약을 제공한 동물의 소유주의 주소, 성명, 동물의 나이, 성별, 병명, 투약한 마약의 품명, 수량, 년 월 일을 기록하여 작성·비치·보존하여야 함.(별지19호 서식)
- ② 향정신성의약품관리대장은 별지20호 서식에 따라 수수시 마다 기록 보존 한다.
- ③ 마약류관리대장의 보존 기간은 2년간 임.

### 7. 처방전의 기재

- 처방전에는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호번호, 서명·날인, 처방전을 환자의 주소, 성명, 나이, 병명, 발급 년 월 일을 기록하여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보존(2년간)하여야 함.

### 8. 마약류관리자 등

- 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나 동 의료기관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의료기관이 마약·향정 관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관리하는 마약·향정미약이 아니면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지 못한다.

※ 주의사항 : 타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판매되었던 마약류를 환자가 반품한 경우 반품 받은 의료기관은 재사용 불가(사고마약류 폐기절차에 따라 폐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중독자에 대하여 중독증상을 완화 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제40조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

-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 9. 행정처분 등

### ① 행정처분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시 받는 불이익의 하나로 마약류의 취급기간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통지되는데 이때 위반자는 자신을 변론할 의견을 개진하고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요청할 수 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과징금 1일 산정 기준은 3만원 임.


### ② 과태료

- 형사벌은 아니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을 위반 시 받는 불이익의 하나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처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지며 사전통지서 받은 즉시 허가관청에 과태료 사전납부의사를 전달하면 과태료의 2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 ③ 형사처벌

-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시 받는 불이익의 하나로 벌칙 양형에 따라 검사의 기소에 의해 판사의 판결을 받거나 검사가 구약식기소하여 벌금 또는 기소유예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 10. 교육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관할 허가관청에서 년 1회 마약류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평소 의문점, 문제점 등을 개진하여 마약류취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기타 마약류와 관련한 사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해설서**」를 참조